

# 고문(자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3. 9.30 법무팀 지침 제1호

<개정> 2016.10.20 법무팀 지침 제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고문(자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사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대리 등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5.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중에서 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위촉은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0.20>

④ 고문변호사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단,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촉된 경우 그때부터 신규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20>

⑤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 식견 및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선정해야 한다.

⑥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제4항 본문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0>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공사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공사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행정심판,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사건이 패소한 경우
4. 법률자문에 대하여 2회 이상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였을 경우
5. 수임비리 또는 변호사로 재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징계전력이 있을 경우
6. 기타 공사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자문료의 지급)** ①공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월정고문료를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의 자문에 서면으로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건당 일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6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공사는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소송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되,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10.20>

③공사는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전부 수임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소송사건별로 고문변호사 또는 기타 다른 변호사에게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 근거하여 수임하게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20>

④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 등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임변호사의 보수 지급)**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공사 <소송업무처리규정> 제4장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고문, 위촉기간,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임 건 수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9.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제정 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10. 20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또는 변호사)은 00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 합니다.

### 1. 법무법인(변호사) 소개

### 2. 소송수행 계획

- 가. 사건의 개요
- 나. 이 사건의 쟁점
- 다. 대응방안

### 3. 승소가능성

###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 가. 업무범위
- 나. 소송비용
  - (1) 착수금 : 1심착수금은 금 원(₩ , 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 (2) 성공보수금 : 1심 전부 승소시 금 원(₩ , 부가세 포함), 일부 승소시 금 원(₩ ,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5. 담당변호사 소개

- 전문분야
- 학력 및 경력
-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 6.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